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등

□ 보증금지기업

1. 재단 또는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나. 제1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4. 신용도판단정보 해당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에 해당하는 기업
5. 재단 또는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6. 재단, 중앙회 또는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5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나. 제5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5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8. 부실자료제출 등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10. 재단, 중앙회 또는 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포함)과 동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11.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12.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경영안정자금 용자지원제한업종

(2025. 1. 2. 개정)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2011.01.01., 2011.08.01., 2017.09.06., 2020.10.12., 2023.10.13., 2024.07.01. 개정)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u>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u>	• <u>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u>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